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가책임 입양체계 운영 및 공중위생·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9호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팀, 입양정책팀”으로, “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을 “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9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를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21호 및 제2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입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적 입양체계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외 입양 관련 제도개선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9. 입양인의 권익보호 및 사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입양 관련 업무 수행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 본문 중 “응급의료과”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로 한다.

제11조제7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를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운영·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육·홍보”를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응급의료체계 운영·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11.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2.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지원

제11조제15항에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응급환자 미수급 대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리

15.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6.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관리 및 평가

19.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전문응급의료센터 관리 및 지원

2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를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응급의료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연구
11.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성중독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 중 “구강정책과”를 “구강정책과, 생활보건팀”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생활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7.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9.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10.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1.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문신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문신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5. 문신사 국가시험·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16.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7. 문신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8. 문신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9. 문신사 관련 법인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제11항(중전의 제10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자살시도자 대상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한다.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제약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약산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4조제7항제2호 중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을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제4호 중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을 “임상 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약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제7호 중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산업 기술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기기산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기·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제1항 단서 중 “4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4명)”을 각각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급 1명)”을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9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847”을 “86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6”을 “58”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2”를 “294”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73”으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1”을 “4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51”을 “87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6”을 “58”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2”를 “294”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78”을 “82”로,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4”를 “4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2”를 각각 “355”로, 3급 또는 4급 이하 “316”을 “319”로 한다.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월 14일”을 “2028년 1월 14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을 “1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명)”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양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아동정책과장이, 생활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강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0]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024. 3. 26.>		
2. 삭제 <2024. 12. 31.>		
3.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보건의료정책실 혈액장기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건강정책국 정신건강관리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데이터진 홍과	9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10.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11.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12.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 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0의2]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3항 관련)

1. 필수의료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필수의료총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

3.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4.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5.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약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6. 통합돌봄사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약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 사보	1

2. 삭제 <2024. 12. 31.>

3. 제3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4. 제3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5.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6. 제3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7. 제39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8. 제39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의료기술서기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⑫ (생략)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차세대 <u>사회보장정보시스템</u> 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략) <u><신설></u> <u><신설></u> ⑭ ~ ⑮ (생략)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u> ----- 10. (현행과 같음) 11.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12.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u>청년정책팀</u> ,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청년정책팀</u> , <u>입양정책팀</u> ----- ----- -----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
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
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⑦ · ⑧ (생략)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 8. 삭제

9.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절차 관련

10의3.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 · 연구 · 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에 관한 사항

11. 입양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약무사무관-----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_____
_____.

1. ~ 5. (현행과 같음)

<작 제>

<삭 제>

<작 제>

<작 제>

<삭 제>

<삭 제>

단체에 관한 사항

12. ~ 21. (생략)

⑩ ~ ⑫ (생략)

<신설>

⑬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12. ~ 21. (현행과 같음)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입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적 입양체계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외 입양 관련 제도개선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9. 입양인의 권익보호 및 사후 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입양 관련 업무 수행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⑭ -----

분장한다.

1. ~ 20. (생 략)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

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⑭ ~ ⑰ (생 략)

⑳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

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8. ~ 16. (생 략)

㉑ (생 략)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⑤
(생 략)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
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
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
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
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
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
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

1.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⑮ ~ ⑳ (현행 제14항부터 제19
항까지와 같음)

㉑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6. (현행과 같음)

㉒ (현행 제21항과 같음)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
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
구관으로 보한다.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23. 삭제

⑧ ~ ⑭ (생략)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
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
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
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
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관

-----.

-----.

⑦ -----

-----.

1. ~ 22. (현행과 같음)

23.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
회의 운영

⑧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3. (현행과 같음)

4.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운
영·개선-----

<삭제>

<삭제>

7. ----- 홍보-----

--

8. 응급의료체계 운영·개선--

9.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

1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⑥ ~ ①⑨ (생 략)

11.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2.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지원

13.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리

15.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6.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관리 및 평가

19.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전문응급의료센터 관리 및 지원

2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⑦ ~ ②⑩ (현행 제16항부터 제1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항까지와 같음)

⑩ 재난의료정책과장-----
-----.

1. 재난응급의료 관련 법령 제
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
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
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
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
류체계에 관한 사항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
연구

11.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12.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성중독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구강정책과, 생활보건팀-----

-----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⑤ -----
-----.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관한 사항</u>	
21. <u>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u>	<삭 제>
22. <u>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 종에 관한 대책</u>	<삭 제>
23. <u>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u>	<삭 제>
24. <u>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에 관한 사항</u>	<삭 제>
25. <u>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 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u>	<삭 제>
26. <u>삭 제</u>	
27. <u>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u>	<삭 제>
28. <u>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 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u>	<삭 제>
29. <u>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u>	<삭 제>
29의2. · 30. (생 략)	29의2. · 30.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u>생활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u> 2. <u>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u>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
종에 관한 대책

7.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8.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에 관한 사항

9.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
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10.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1.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
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

12.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문신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문신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⑧ · ⑨ (생략)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

15. 문신사 국가시험·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16.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7. 문신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8. 문신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9. 문신사 관련 법인의 지원 및 관리

⑨ ·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⑪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자살시도자 대상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
장품산업과-----

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⑤·⑥ (생 략)

⑦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
립

4.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
한 사항

6.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7.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
원에 관한 사항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약바이오산업과장-----
-----.

1. 제약산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의 운영-----

3.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5.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
항

6. 제약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8. 보건산업 기술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삭 제>

⑧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기기산업 관련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5.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기·화장품산업 발전
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
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및 해외 홍보 지원에 관
한 사항

8. 의료기기·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③ _____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설>

제39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

----- 6급 1
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9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2027
년 12월 31일-----

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⑤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
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
26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
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
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8
년 6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
28년 1월 14일-----.

②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1명-----

지서기보 2명)은 <u>2025년 12월 3</u> <u>1일까지</u> 존속한다.	----- <u>2027년 12월 31</u> <u>일</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47	867	+20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6	58	+2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2	294	+12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	73	+4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	• • <u>41</u> • •	• • <u>43</u> • •	+2
--	--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51	870	+1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6	58	+2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2	294	+12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78	82	+4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44</u>	<u>46</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2</u>	• <u>355</u>	+3
일반직 계	<u>352</u>	<u>355</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6</u>	<u>319</u>	+3
•	•	•	